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6. 1. 15.

임실군의회의회장

## 1. 제정이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통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수행에 활용과 교통봉사활동 및 애향심을 높여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통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교통관련 단체의 지원사항 (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 마. 심사예고 : 생략
- 라. 기타
  - 1) 관계법령 발췌문 : 없음

##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임실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 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단체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 「임실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